

변론의 녹취(속기) 신청

사건 2006 고단 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인 김명호,

위 2006 고단 2459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위증 내지는, 법정 내에서의 거짓말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9월 21일 공판기일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변론 전부를 녹취하여 주실 것을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 대법원 재판 예규에(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송일 81-7)(송일 83-2) 의하면,

제 목: 공포일 1981.11.16 제정 81.11.16.

송무심의 제 49 호 83.8. 1 송무심의 제 65 호 개정 88.5. 4 민사 제 556 호

“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 개 법정

중 금년말까지 84 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13

위 피고인 김명호

서울중앙지법(단독 제8부) 귀 중